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자원 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이선희 의원 외 10명)

#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4
----------	-----

발의연월일 : 2024. 1. 15.

발 의 자 : 이선희 · 이춘우 · 이형식  
김창혁 · 강만수 · 김대진  
박용선 · 박규탁 · 이동업  
박성만 · 최병준  
의원 (11명)

## 1. 제안이유

- 지속적인 인구감소, 청년인구 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유·무형의 지역자원에 자신만의 사업모델을 접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음.
- 정부는 최근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의 잠재적 가치와 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 및 육성해 나가고 있음.
- 이에 도내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하고, 나아가 지역적 가치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 라.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 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 사.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3. 조례안: 붙임

## 4. 관계법령 발췌: 붙임

-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5. 관련부서 협의

- 가. 법제심사: 의견 일부 반영
  - 예산입법담당관(예산입법담당관-40, '24.1.9.)
- 나. 규제 검토의견: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법무혁신담당관(정책기획관-528, '24.1.11.)
- 다.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음
  - 감사관(정책기획관-528, '24.1.11.)
- 라. 해당부서 검토의견: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를 포함하여 로컬크리

에이터의 발굴·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을 포함한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함

- 인구정책과(정책기획관-528, '24.1.11.)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6. 발의의원 서명부: 붙임

##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 위기 타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의 자연·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적·문화적 특성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로컬크리에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전문기관 및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장 또는 직원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업, 유관기관, 단체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창업국가 건설을 위하여 신산업창업 및 기술창업(이하 “신산업·기술 창업”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국제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예비재창업자, 재창업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성, 사업성, 혁신성, 성장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지역특화형 신산업·기술 창업의 활성화)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특화된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기술 창업의 촉진 및 관련 창업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규제자유특구의 특

성 및 완화된 규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 등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기업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가.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투자요소 및 재원조달 방안 등  
(안 제4조제1호~제4호)

### 나. 지원사업(안 제5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육성 및 인프라 확충,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해외진출 지원,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산·학·연·관  
협력, 교육 및 인력 양성 등(안 제5조제1호~7호)

###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정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등(안 제7조제1호~3호)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가. 본 조례는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추후 시행계획 수립시 예산부서  
재정합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음

## 4. 작성자

지방시대정책국 인구정책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승준(054-880-4518)



# 경 상 북 도



수신 인구정책과장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인구정책과-2325(2024. 1.11.)호와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조례(규칙)명	검토의견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조례안은 도내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계획수립, 사업지원, 포상 등에 비용이 수반 될 것으로 추정되나,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비용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li> <li>• 다만, 해당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수반 사항 발생시,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비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검토 및 예산부서와의 재정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li> </ul>

끝.

## 경 상 북 도 지 사

관인생략

---

\*주무관 **권오순** 예산총괄팀장 대결 2024. 1. 11. 예산담당관 전결  
협조자 **권미숙**

시행 예산담당관-579 (2024. 1. 11.)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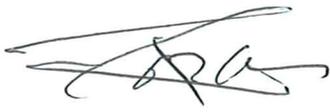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189 / [jovi271@korea.kr](mailto:jovi271@korea.kr) / 대한민국 공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가 최적지입니다.

# 발의의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 원 명	서명 또는 사인	비 고
이선희		
이준의		
이형식		
김창혁		
강만수		
김대진		
박용민		
박규택		
이동엽		
김성민		

